

대학발전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3. 7. 12.
- 개정 : 2017. 2. 28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20. 3. 1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.)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학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본교 대학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·장기발전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
2. 대학의 연간운영계획 수립과 추진
3. 대학 기구의 설치 및 개편
4. 학과 구조조정 및 정원조정
5. 대학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그 구성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위 원 15인 이내
3. 간 사 1인 (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)
4.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본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,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전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중점과제 및 추진 우선순위 결정
2. 학교발전을 위한 여론 및 의견수렴
3. 소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

③ 소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6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다음 기능을 담당한다.

1.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과제 조사 및 연구
2. 전체회의에 부의할 안건 작성

제9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0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1조(규정변경) 이 규정의 변경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위임)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자료요청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